

2007. 7.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7.13	2007.7.13	2007.7.19	2007.7.19	회계과장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	"	신순철 의원

2. 제안설명 요지

가.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그동안 결산검사위원회원에게 지급하던 일비산정의 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이 적용할 일비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회원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지급 기준인 회기수당 폐지로 사문화된 단서를 삭제함
(안 제10조)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변경됨

나) 결산검사위원 일비산정 기준을 조정함 (안 제13조)

- 충주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한 회기수당 상당액
⇒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한 수당 상당액

나.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제정되면서 각 법률에서 허가·등록 또는 신고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별표1의 제2호 나목에 다음 내용을 삽입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1건	20,00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	20,000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1건	10,00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	1건	2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1건	5,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
(안 제1조)
- 나)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하되 과수의 경우 피해 과실의 평균피해율로 산정(안 제3조 내지 제4조)
- 다)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의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5조)
- 라) 피해액의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소득자료에 의함(안 제7조)
- 마) 피해 지원금은 피해액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안 제8조)
- 바)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제 10조 내지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해 왔던 일비의 지급 기준인 회기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중 삭제되는 단서 조항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미가 없어진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 의회 의원의 일비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2의 변경은 새로운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게 되어 종전의 일비지급액과 다름없이 지급 가능한 사항임.

나.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 안은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제정되면서 각 법률에서 허가·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새로이 규정되는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결과 관련 법령상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수수료 금액은 충청북도 조례의 유사항목을 적용한 것으로 특이 사항 없음.

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민이 농업경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피해면적의 산정은 농작물의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과수의 경우 과실의 평균 피해율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소득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지원액은 산출한 피해액의 70%를 생육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작물 복구비 보다 3~5배정도 많은 금액으로 실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고 판단됨.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농가당 연간 지원액은 최대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였고

과도한 지원신청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율 20% 미만의 농경지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상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지원하려는 의도라 판단됨.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불법으로 경작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으나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안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가 피해보상기준을 고시하게 되면 본 조례안의 지원기준은 그에 따라 개정이 될 것으로 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용어 및 자구, 형식 등에 문제점이 없고 정책적으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미 2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이 반영되는 등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시급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각국별 FTA협정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다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농촌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임.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질의 : 의원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는 것인가?

○ 답변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의원들께 지급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 보면 되겠음.

▶ 질의 : 의원에게도 지급 가능하다는 것인가?

○ 답변 :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반반 정도임. 행자부에서 결정을 내려 다시 지침을 내릴 계획에 있음.

나.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최저 지급액이 10만원이면, 전체 농민이 다 해당될 것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 답변 : 영세농을 위해 10만원으로 정했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제5조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호 “농가”를 “경작지”로
수정)

6. 별 임

- 가.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호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제2호중 “농가”를 “경작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생략) 1.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u>10만원</u> 미만인 경우 2. 해당 <u>농가</u> 의 피해율이 20퍼센트 미만 인 경우 3.~5. (생략)	제5조 (제정안과 같음) 1. ----- <u>20만원</u> ----- ----- 2. ---- <u>경작지</u> 의 ----- ----- 3.~5. (제정안과 같음)